

서울중앙지방법원 2018. 12. 11 선고 2018가단50353 판결 [구상금 청구의 소]

전 문

원고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

피고1. 주식회사 A

2. B

변론 종결2018. 11. 27.

판결 선고2018. 12. 11.

주 문

1.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54,627,914원 및 그 중 50,607,758원에 대하여 2018. 6. 13.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.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: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
2.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)

판사김도현

별지